

제221회 정례회  
2003. 12. 18(목)

# 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전문위원 임석규

## 검 토 보 고 서

-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. 2003.12.18(목)
- 2003년 11월 1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
-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- 먼저,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
- 의료보호법이 2001년 5월 21일 의료급여법으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기금명칭 및 용어 등 변경된 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.
  - 주요골자로는
    - 동 조례의 제명과 내용 중 “의료보호기금”을 “의료급여기금”으로 변경하며(안 제1조, 제7조)
    - 제1조중 “의료보호법 제21조”를 “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”로
    - 기금담당관을 복지환경국장으로,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담당사무관으로“ 각각 신설 임명하고(안 제6조)
    -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신설 설치·운영하되 그 기능은 충청북도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토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.(안 제8조)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.

- 금번 제출된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여 그 체계를 정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.

\* 의료급여법 전문개정(이유, 주요골자) : 별첨

- 그러나 동 조례의 내용중

-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그 기능을 대행토록 규정한 충청북도생활보장위원회가 의료급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심사 할 수 있는지의 적합성 여부와(안 제8조)
- 그 대행위원회의 설치 근거(조례) 및 위원들의 자격 적합 여부

#### ※ 위원회 위원의 자격(의료급여법 제6조 제4항)

- 의료보장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
cf>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자격 :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
- 공익을 대표하는 자
-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
- 또한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(條例)로 정한다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데, 위원장을 지명하지 않은 점

- 아울러 대행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장의 임기, 회의소집, 기타 위원들에 대한 수당지급 등에 대한 규정 명시 여부와
-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 동 조례에 신설하여 조례의 법적 체계를 갖추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\* 참고로 위에서 보고드린 사항을 정리한 수정안과 관련법 조문을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(별첨 : 산구조문대비표)

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